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nform.pwc.com

pwc

SAMIL | 삼일회계법인

August 2014

No. INT2014-05

Background	1
Overview of the model	3
The model in detail	4
Transition	16
Implementation challenges	19

IFRS 9: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At a glance

2014년 7월 24일에 IASB는 IAS 39의 대부분을 대체할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의 최종본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금융상품 기준서는 특정 채무상품에 대해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범주를 제시하는 등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개정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을 좀 더 일찍 인식하는 새로운 손상모형도 포함합니다.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해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 대해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2013년 11월에 발행된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내용도 IFRS 9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들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특히 금융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IFRS 9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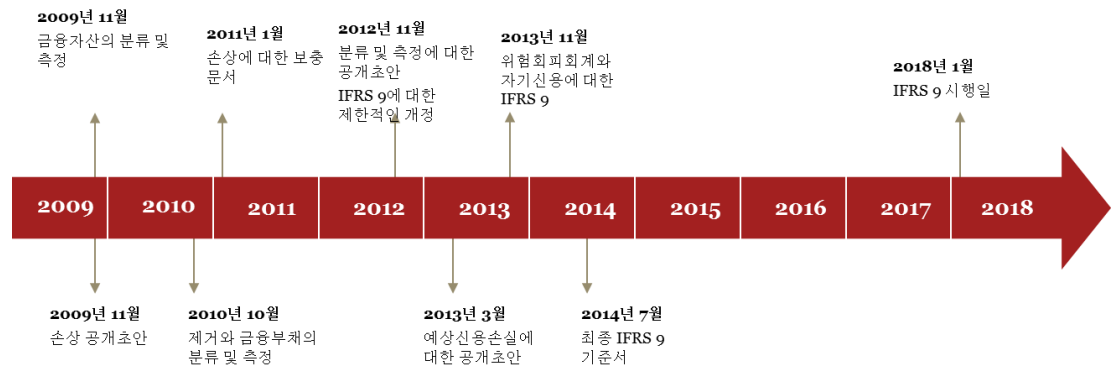
금번 In depth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변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에 대한 내용은 In Depth “IFRS 9: Expected credit loss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회피 모형은 “General hedge accounting Practical guide”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Background

금융위기 시기에 G20는 국제 회계기준 제정기구에게 단일의 고품질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제정을 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IASB와 FASB는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IASB는 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진행업무를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의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매크로 위험회피회계¹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고려될 것입니다.

¹ 토론서인 ‘동적 위험관리의 회계처리: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평가접근법’이 2014년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IFRS 9의 진행일정



IASB는 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첫번째 이정표로 IFRS 9 (2009)를 2009년 11월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을 상각후원가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VPL')의 두 가지 범주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IASB는 개정된 IFRS 9 '금융상품' (2010)을 발행했습니다. 2010년의 IFRS 9는 금융부채에 대한 지침과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에 있어 자기신용위험의 변화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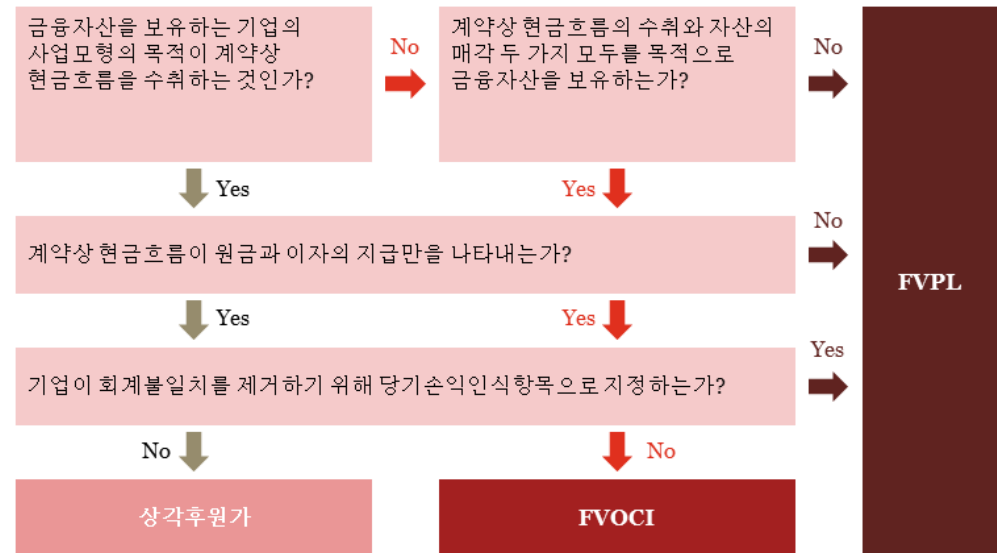
2012년 11월에는 기준서에 대해 제기된 특정 실무적용의 이슈를 다루고 FASB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IFRS 9 (2010)에 대한 제한적인 개정을 담은 공개초안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FASB는 잠정적으로 IASB와 유사한 분류 및 측정 모형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FASB의 분류 및 측정 프로젝트는 현행 US GAAP의 내용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1월에는 매크로 위험회피를 제외한 위험회피회계의 최종 규정이 발행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IASB는 새롭고 완전한 IFRS 9('IFRS 9' 또는 '새 기준서')를 발행했습니다. 최종 IFRS 9는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손상, 분류 및 측정의 규정을 포함합니다.

Overview of the model

IFRS 9 하에서 채무상품의 분류는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업모형 및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보유된다.
-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SPPI')을 나타낸다.

이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최초에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다음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상품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OCI')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자산의 매각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를 나타낸다.

FVOCI 의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장부금액의 변동 중 손상의 인식으로 인한 손익 및 이자수익,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이를 제외한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됩니다.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새로운 모형 하에서 FVPL 은 잔여 범주입니다. FVOCI 나 상각후원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금융자산은 FVPL 로 분류됩니다.

FVPL 의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모든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사업모형의 평가에 따른 분류와 관계없이 기업은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FVPL**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주 간의 재분류는 허용되지만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model in detail

사업모형 평가

IFRS 9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나 **FVOCI** 또는 **FVPL**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사업모형은 금융자산이 관리되고 그 성과가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방식에 따라 주요경영진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이 함께 관리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금융상품별 분석이 아니며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PwC observation:

단일 기업이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위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시키기 위해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투자자산으로 구성된 다른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그러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하위 포트폴리오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부동산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그 대출 중의 일부를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대출금은 매각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일부 자산은 '위기 상황'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고 나머지 자산은 기업의 일상적인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하여 자산이 지속적으로 매각되게 되는 유동성 포트폴리오의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사업모형을 반영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분할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보유가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지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판단이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형은 사실의 문제이지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모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한 가지의 요소나 활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진은 평가일에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사업모형(과 보유되는 금융자산)의 성과가 측정되고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방법
- 사업모형(과 보유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러한 위험이 관리되는 방식

- 사업의 관리자가 보상받는 방법(즉, 관리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수취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해서 보상받는지)

PwC observation:

사업모형의 평가에는 판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사실과 상황 및 특정 상품들과 관련된 기업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예: 국채)을 그 자산을 관리하는 모형과 의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

자산이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라면 그 자산이나 포트폴리오는 수취를 위한 사업모형 하에서 SPPI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분류될 것입니다.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매각이 발생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IFRS 9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에서 매각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특정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과거의 발생빈도, 시기 및 매각 가치
- 매각의 이유(예: 신용등급의 하락)
- 미래 매각활동에 대한 예상

매각 자체가 사업모형을 결정하지는 않고, 따라서 사업모형의 결정 시 매각 사실만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매각에 대한 정보와 미래 매각에 대한 예상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목적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현금흐름이 실현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용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용위험관리활동은 수취를 위한 사업모형과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기업의 문서화된 투자정책에 명시된 신용등급보다 하락하여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해 매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없더라도 기업이 신용위험의 증가 때문에 매각이 발생했음을 다른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관리활동과 관련없는 금융상품의 만기 이전 매각이나 이전은 그러한 매각이나 이전이 빈번하지 않거나 (빈번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또는 합계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사업모형과 일관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각이 빈번하지 않거나 유의적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기업들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기간동안 매각의 빈도와 매각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그러한 매각의 이유를 설명하고 왜 그러한 매각이 사업모형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는 목적과 언제나 일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융자산이 만기에 근접해서 매각되고 매각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잔여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로 인한 것과 거의 같다면 매각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는 목적과 일관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서는 사업모형의 평가를 수행하는 몇가지 방법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금융자산의 매각이 사업모형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경영진은 그러한 매각이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집합을 수취를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보유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각 모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업모형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각 모두를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각 모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업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를 **FVOCI** 사업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만을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과는 달리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각 모두를 통해 달성됩니다.

FVOCI 사업모형과 일관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상적인 유동성 수요를 관리한다.
- 특정 이자 수익을 유지한다.
- 금융자산의 만기를 자산의 자금 조달을 위한 부채의 만기와 일치시킨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새 기준서는 사업모형의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의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FVOCI 범주는 이자를 창출하기 위해 채무상품에 투자했지만 가격이 유리하거나 기업의 순위험과 만기 및 유동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도 있다는 실무 상황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정보는 이 범주에 속하는 금융상품들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잠재적인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것이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FVOCI** 사업모형(수취와 매각 모두를 위해 보유)과 더 맞는지 상각후원가 모형(수취를 위해 보유)과 더 맞는지 또는 잔여 범주인 **FVPL**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업모형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사업모형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고, 따라서 개별 포트폴리오들을 평가하는데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FVPL 사업모형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집합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매각을 위해 보유되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집합은 **FVPL**로 측정됩니다. 새 기준서에서 **FVPL**은 잔여 범주입니다. 그러나,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을 식별하는 지침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산의 매각을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산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공정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산을 관리합니다(예: 단기매매 포트폴리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한다 하더라도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것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이기 때문입니다.

PwC observation:

IAS 39 하에서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고 성과가 평가되는 집합의 일부로 보유되는 자산은 **FVPL**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분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자산은 **FVPL**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1: 사업모형 평가 – FVPL

기업이 추후 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려는 의도로 대출을 하였습니다. 대출채권의 매각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는 계속해서 대출채권으로 인식되지만 대출채권을 발생시킨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제거됩니다.

분석: 유동화회사가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대출채권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즉, 회계적으로는 매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관리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발생시킨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제거될 것이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매각을 위해서 보유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채권은 별도재무제표에서 **FVPL** 범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사업모형에 대한 판단이 수행되고 나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SPPI')을 나타내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상각후원가 또는 **FVOCI**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FRS 9는 '원금'과 '이자'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금: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원금의 금액은 원금의 지급 등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존속기간 동안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이자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자에는 기본적인 대여로 인한 다른 위험(예: 유동성위험)이나 일정 기간동안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되는 원가(예: 서비스 원가, 관리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을 포함합니다.

IFRS 9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잔여 원금에 대한 **SPPI**를 나타내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인 대여 활동과 일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인지를 금융자산이 표시된 통화로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 등 기본적인 대여와 관계 없는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되게 하는 계약상 특성은 **SPPI**인 계약상 현금흐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와 이익참가사채는 **SPPI**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PwC observation:

현금흐름에 변동성을 부여하는 많은 내재파생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낸다는 것과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재파생상품이 **IAS 39** 하에서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새로운 기준에서 상각후원가나 **FVOCI**로 분류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AS 39에 따라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한(cap)이나 하한(floor)과 같은 일부 내재파생상품은 **IFRS 9**에서 **SPPI**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일부 복합계약은 **IAS 39**에서는 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지만 **IFRS 9**에 따라서는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FVPL**로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계약상 현금흐름의 검토

새로운 기준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 **G**는 영구금융상품이지만 발행자는 어느 시점에든 재매입할 수 있으며 보유자에게 액면금액과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금융상품 **G**는 시장이자율을 지급하지만 그러한 지급 직후 지급여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자의 지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연된 이자는 추가적인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분석: 금융상품 **G**가 영구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영구금융상품은 계속적인(복수의) 연장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옵션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이자의 지급이 의무사항이고 영구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SPPI**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자는 이자의 지급을 이연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연된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금액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로서의 대가가 아닙니다. 만일 이연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일 수 있습니다.

수정된 원금과 이자만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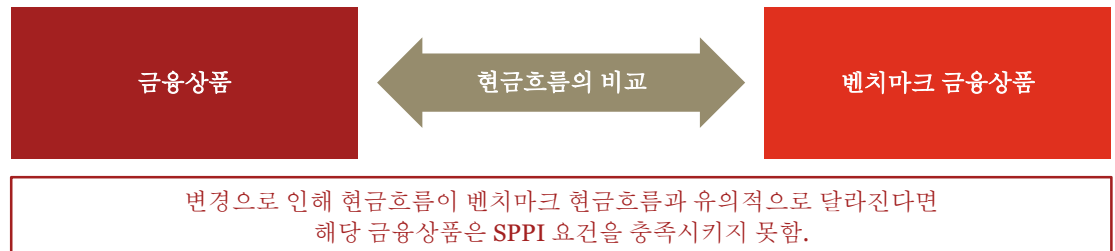
새로운 **IFRS 9**는 이자 요소 중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²가 수정된 경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를 나타내는지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수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

이자율 중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단지 시간의 경과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질적인 접근과 양적인 접근이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서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수정된 금융상품을 검토할 때 완전한(벤치마크) 금융상품(즉, 화폐의 시간가치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가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검토와 비교하도록 합니다. 벤치마크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검토하는

² 화폐의 시간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이자의 요소입니다.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다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SPPI 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FVPL 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수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가지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분석하지 않거나 거의 분석하지 않고도 벤치마크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르거나 또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자세한 양적인 검토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적인 검토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양적인 검토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기업은 금융상품의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수정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인 벤치마크 현금흐름과 비교합니다.
- 적절한 비교가능한 ‘벤치마크’금융상품은 신용도가 같고 평가대상이 되는 수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계약조건(예: 같은 재설정조건)을 가진 금융상품입니다
- 벤치마크 금융상품은 실제의 또는 가상의(시장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시장 표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자산일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수정된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를 매 보고기간과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업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기준서는 시나리오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어 복수의 시나리오가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수정된 화폐의 시간가치를 가지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적절하게 분류와 측정을 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만기를 재설정하는 특성이 있고, 이자율이 10 년간에 대한 이자율로 매년 재설정되는 만기 10 년의 사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사채의 최초 만기와 연계됩니다.

SPPI 요건 검사를 위해 이 사채의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매년 1 년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사채의 현금흐름과 비교하는데, 두 사채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검토 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자율 시나리오 및 1 년 이자율과 10 년 이자율의 관계가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현금흐름이 (1 년 이자율에 근거한) 벤치마크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르다면, 해당 사채는 SPPI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FVPL 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이자율을 설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목적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규제된 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시간의 경과와 대략 일관된 대가를 제공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본적인 대역활동과 일관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노출이나 변동성이 없다면 SPPI 요건을 검토할 때는 화폐의 시간가치의 대용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질적인 검토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예외조항이 없었더라면 이자율이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FVPL로 분류되어야 하는 규제이자율이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재논의 기간 동안, IASB는 중국의 특정 대역금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대역금의 이자율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잔여만기나 다음 재설정일까지의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초 만기에 따라 이자율이 재설정되거나(예: 최초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3년 이자율로 재설정) 재설정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인해 규제이자율이 대략적으로 시간의 경과와 일관되는 대가를 제공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본적인 대역활동과 일관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노출이나 변동성이 없는 한 이러한 종류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상품이 SPPI 요건을 위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De minimis’ 특성

SPPI를 나타내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미한’(de minimis) 영향만이 있다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향이 미미한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가능한 영향을 매 보고기간 및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이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wC observation:

새 기준서는 그 특성이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특성은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실질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SPPI 요건 평가에 이러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례 3: ‘미미한’ 영향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금융자산이 발행자가 적용가능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포함하며 이 조항에는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발행자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 발행자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SPPI 요건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미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언제나 미미하다면 그 특성의 성격이나 그 특성에 따른 현금흐름의 발생 조건이 무엇인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특성은 SPPI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사건

새 기준서는 조건부 사건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SPPI**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조건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조건부 사건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되기 이전과 이후 모두에 대해 계약상 현금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부 사건의 성격 그 자체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인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판단의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례 4: 조건부 계약상 현금흐름

비금융기관이 **LIBOR + 2%**를 지급하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채의 계약조항에 따라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하면 전체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LIBOR + 3%**로 재설정됩니다.

분석: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은 금융상품의 증가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SPPI**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주가지수가 특정 수준이 되는 경우에 더 높은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해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원금 잔액에 대한 **SPPI**를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기상환 및 만기연장 옵션

새 기준서는 조기상환이나 만기연장 옵션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몇 가지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FRS 9는 그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SPPI**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경영진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그러한 계약조항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조기상환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는 경우,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나 보유자(채권자)가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만기 이전에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조건. 이 조기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옵션의 조건에 따른 만기연장기간 동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 잔액에 대한 **SPPI**를 나타내는 경우, 발행자나 보유자가 채무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조건(만기 연장 옵션).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기준서는 조기상환 특성으로 인해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 할인이나 할증된 금액으로 취득되거나 최초 발생되고,
- 조기상환 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미지급이자를 나타내며(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보상이 포함될 수 있음),
-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조기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이지 않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금융자산이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상각후원가나 **FVOCI**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사업결합을 하거나 고정이자율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취득하면, 취득자는 재무상태표에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자는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취득한 대여금을 분류해야 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소매 부동산담보대출은 법률에 따라 위약금에 일정금액의 상한이 있는 조기상환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차입자가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조기상환하고 보다 유리한 이자율로 다시 자금조달하려는 재무적인 유인이 있음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적인 비율의 차입자는 전략적으로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기상환 옵션이 이자율이 하락하는 기간에 개별 차입자들에게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공정가치가 계속해서 조기상환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모형 하에서 대여금이 SPPI 요건에 위배될 수 있고 사업결합 이후에 FVPL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tranches)

일부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은 다른 금융상품 집합에 대해 지급한 금액과 계약상 연계됩니다. 이러한 자산을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랜치)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융상품의 보유자는 발행자가 더 상위의 트랜치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한 경우에만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보유자는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의 조건에 기초하여 'look through' 접근법을 사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분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접근법은 금융상품 자체의 조건뿐 아니라 기초자산 집합의 조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 시에는 기초 금융상품의 특성과 기초 금융상품 집합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트랜치의 노출정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개별 트랜치를 상각후원가나 FVOCI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금융상품의 집합을 통째서가 아니라, 해당 트랜치 자체가 SPPI인 현금흐름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기초자산 집합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 잔액에 대한 SPPI인 하나 이상의 금융상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기초자산의 집합은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합니다.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에는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자산 집합에 속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감소시키거나(예: 이자율 상한 또는 하한이나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을 감소시키는 계약),
- 다음에 해당하는 차이만을 다루어 기초자산 집합의 현금흐름과 트랜치의 현금흐름을 일관되게 하는 금융상품
 - 이자율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통화(해당 통화의 물가수준 포함)
 - 현금흐름의 시기

또한, 해당 트랜치의 신용등급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자금이 단일 트랜치에 의해 조달되었을 경우 그 단일 트랜치에 적용되는 신용등급과는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합니다.

PwC observation:

새 기준서는 가중평균 신용위험 검사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트랜치의 신용등급을 기초자산 집합의 평균 신용위험과 비교하면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비교로 간단하게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트랜치의 상대적인 변동성을 비교하는 보다 복잡한 양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집합에 포함되는 금융상품 중 위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없거나, 최초 인식 이후에 기초자산 집합의 구성에 변동이 있어 요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거나, **look through** 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다면 트랜치는 **FVPL**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집합이 상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담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트랜치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담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PwC observation:

기초자산 집합에 포함되는 개별 금융상품별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집합에 포함된 금융상품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분석을 수행하고 적절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환청구권이 없음(Non-recourse)

상환청구권이 없는 계약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담보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만을 통해서 청구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명시된 자산이 전체 청구금액을 보전하는데 부족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 법적인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에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 상각후원가나 **FVOCI**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분류대상 금융자산의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SPPI** 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기초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검토(**look through**)해야 합니다. 만일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요건과 일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현금흐름이 제한되거나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된다면, 그 금융자산은 전체가 **FVPL**로 측정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SPPI** 요건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지급될 현금흐름의 금액이 자산의 성과에 따라 달라짐(예: 유효도료를 통행하는 차량의 수에 따라 지급될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으로 선지급할 수 있는 대여금

PwC observation: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여금을상각후원가나 **FVOCI**로 분류할 때 상환청구권이 없는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대여의 유형을 검토하는데는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례 5: 지분상품이 담보로 제공된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여금

은행이 고정이자율 및 고정만기를 가지는 대여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 대여금은 상환청구권이 없으며 지분상품 포트폴리오가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차입자는 대여금의 만기에 지분상품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해당 대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입자는 주가의 상승분을 향유하지만, 은행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 경우의 가격결정은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한 것과 같게 됩니다.

분석: 이 대여금은 지분상품의 성과에 따라 상환될 금액이 달라지므로 **SPPI** 요건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분류

새 기준서는 최초의 분류가 결정된 이후, 언제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 집합이 재분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IFRS 9는 경영진이 사업모형을 검토한 시점에 기업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실현되는 것이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에 **IAS 8**에 따른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산을 분류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많거나 적은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모형을 검토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고려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해당 사업모형에 따라 보유 중인 잔여 금융자산(과거 기간에 인식했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분류를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를 인식합니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것으로 기대되며, 그러한 변경은 외부 또는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의해 결정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당사자에게 변경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개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발생할 것입니다.

재분류는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손상으로 인한 손익을 포함하여, 과거에 인식된 손익 및 이자를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표는 여러 다른 재분류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입니다.

기존 범주	새로운 범주	회계처리 영향
상각후원가	FVPL	재분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FVPL	상각후원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됩니다.
상각후원가	FVOCI	재분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상각후원가와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됩니다. 유효이자율이 재분류로 인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범주	새로운 범주	회계처리 영향
FVOCI	상각후원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상각후원가 장부금액이 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적으로 인식된 손익은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조정됩니다.
FVPL	FVOCI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장부금액 ³ 이 됩니다.
FVOCI	FVPL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 됩니다. OCI에 누적된 손익은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지분상품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지분상품은 IAS 32에서 정의된 대로 발행자의 관점에서 ‘자본’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상품입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은 FVPL로 분류됩니다. 그 외의 모든 지분상품에 대해 경영진은 최초인식시점에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번복불가능한 선택을 지분상품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투자원가에 대한 회수를 나타내는 배당을 제외한 모든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예: 지분상품의 매각 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고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 6: 풋가능 주식에 대한 투자

기업이 풋가능주식을 발행한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즉, 해당 풋가능주식의 보유자인 기업은 지분비율에 따른 순자산에 받는 대신에 발행기업에게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분석: 풋가능 주식은 발행자의 관점에서 지분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IAS 32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IAS 32의 문단 16A부터 16E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IAS 32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풋가능 주식은 IFRS 9에서 지분상품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FVPL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례 7: 지분 상품

기업이 발행기업이 발행기업의 보통주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고정 액면이자를 무한정 이연할 수 있는 후순위 영구채에 투자했습니다. 해당 영구채의 상환권은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분석: 해당 영구채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현금흐름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IAS 32에 따라 이 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영구채 보유자는 IFRS 9 하에서 이 투자자산을 FVOCI나 FVPL로 선택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³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새 기준서는 **IAS 39**에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가능한 공정가치측정치 범위가 넓고 그 범위내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FRS 9**는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예산, 계획 혹은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
- 피투자자가 달성할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기대가 변동한 경우
-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국제 경제 또는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비교가능한 기업의 성과 또는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의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피투자자의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 피투자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제 3자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신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에 의한 외부 거래의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부채

IFRS 9의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은 기업이 금융부채를 **FVPL**로 측정하는 것을 선택한 부채의 경우를 제외하면 **IAS 39**에서의 분류 및 측정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부채의 경우 자기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자기신용위험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해당 부채가 제거되거나 그 금액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파생상품은 여전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와 관련된 지침은 **IAS 39**의 지침과 일관됩니다.

Transition

IFRS 9는 새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1일 이후에는 **IFRS 9**의 기존 버전이 아니라 **IFRS 9**의 완성본만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위험회피회계 및 자기신용위험과 관련된 문단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IFRS 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⁴ IASB는 이러한 사항이 금융기관이나 투자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도출근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선택은 매크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가능하며, 모든 위험회피 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새 기준서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고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규정만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2018년 1월 1일에 시행일이 도래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새 기준서는 소급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대한 일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최초적용일⁵에 존재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업모형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PwC observation: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해서 사업모형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날에 존재하던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교 재무제표의 재작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초 적용연도에 새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기초 시점의 이익잉여금을 조정합니다.

IFRS 9는 소급적인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 일부 운용상의 단순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순화 규정은 최초 적용일에 적용됩니다. 최초 적용일은 새 기준서의 발표 이후 보고기간의 개시일이어야 합니다.

운용상의 단순화

- 최초적용일에 다음의 검토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화폐의 수정된 시간가치 요소를 검토(계약상 현금흐름 검토)하거나,
 -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조기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이지 않은지를 검토

이 때 경영진은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수정이나 조기상환 특성의 예외와 관련된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유효이자율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과거 기간을 재작성 한다면 매 비교기간말의 해당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상각후원가로 봅니다.
 - 최초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최초적용일의 해당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봅니다.

⁵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새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날이며, 보고기간의 개시일이어야 합니다.

경과규정 공시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IFRS 9**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변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IAS 39**나 최종본 이전의 **IFRS 9**에 따라 결정된 기존의 측정범주와 장부금액 및 최종 **IFRS 9**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측정범주와 장부금액
- 종전에 **FVPL**로 지정되었으나 더 이상 **FVPL**로 지정되지 않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금액. 최초적용일에 **IFRS 9**에 의해 재분류가 요구되는 것과 기업이 재분류를 선택한 것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i) 새 기준서의 분류 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와
 - (ii) 최초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FVPL**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이유
- 이용자가 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및 **FVPL**이 아닌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에 대한 정보

IFRS 9의 발행으로 개정된 **IFRS 7**의 실무지침에 공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기업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최초적용일에 새로운 총장부금액으로 간주한다면(상기 운용상의 단순화 참조), 제거 시점까지 매 보고기간에 공시가 필요합니다.

Implementation challenges

새로운 분류 및 측정의 규정은 경영진이 새로운 사업모형의 규정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를 검토해야 하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새 모형은 **IAS 39**에서의 지침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사업모형의 검토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한 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 기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매각을 추적 관찰하고 **SPPI**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분류를 판단한 이유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모형의 검토가 기업이 사업모형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지의 과거 경험에 일부 의존하기 때문에(예: 유의적이고 계속적인 매각이 있었는지의 여부) 기업들은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과거 경험을 위해 가능한 빨리 이러한 정부들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서가 시행될 때까지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IFRS 9**의 도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advice. You should not act up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PwC does not accept or assume any liability, responsibility or duty of care for any consequences of you or anyone else acting, or refraining to act, in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or for any decision based on it.

© 2014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140801-094723-BO-OS